

서울특별시지적삼각점영구측표설치및관리

규정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8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강



지적삼각점
영구측표설치

서울특별시지적삼각점영구측표설치및관리규정폐지규정안

제 19 호	제 19 호	제 19 호
담당자	부담자	부담자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지적측량기준점의 측량방법이 점차 GPS(위성측량)측량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설치의 실익이 상실 되었으며, 영구측표의 재질이 철재로되어 GPS측량시 전파방해 등을 야기하여 정확한 관측 및 수신을 저해하고 있어 국립지리원에서 우리시 지적삼각점 영구측표를 철거하도록 하는 협조요청이 있었던바,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제 216 호
부시장

가. 관계법령

● 지적법 제30조(지적측량기준점표석 또는 표지의 설치)

- ①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등에 지적측량기준점 표석 또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②지적측량기준점 표석 또는 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적법시행령 제30조(지적측량기준점의 관리)

-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 표석 또는 표지는 소관청이 관리 하되, 그 일부를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한 비영리 법인(이하 "대행법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지적측량의 편의를 위하여 대행법인이 지적측량기준점 표석 또는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 그 지적측량기준점의 측량성과를 소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이를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 표석 또는 표지로 본다. 이 경우 지적측량기준점 표석 또는 표지는 대행법인이 관리한다.
- ③지적측량기준점 표석 또는 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소관청 또는 대행법인은 이를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 ④소관청이 토지소유자나 공사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 표석 또는 표지를 이전하거나 그 상태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이로 인한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의 비용을 신청인으로 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토지에 지적측량기준점 표석 또는 표지가 설치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이용등을 위하여 이전 또는 재설치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전·재설치의 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지적삼각점영구측표설치및관리규정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지적삼각점영구측표설치및관리규정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100-744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번지 / 전화 (02)3707 - 8057 - 8 / 전송3707 - 8069
 처리부서 : 지적과 (중구 서소문동 별관 404호) 담당 최영창

문서번호 지적13531 - 1700

시행일자 1997. 12. 19.

수신 법무담당관

참조

선	결	업무상양산 3	지	
접	일자	1997. 12. 19.	시	
	시간		결	양계명 - 101
수	번호	4446	재	
처리과			공	
담당자		김현구	람	

제목 서울특별시지적삼각점영구측표설치및관리규정 폐지안 송부

서울특별시지적삼각점영구측표설치및관리규정(훈령 제497호 '79. 1. 8)을 별첨과 같이 폐지코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방침결정서 사본 1 부.
 2. 폐지규정(안) 5부.
 3. 폐지규정공고 (안) 5부. 끝.


지 적 과 장

지적과장 김영창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전화 (02)3707-8058 전송 (02)3707-8069
 처리부서 : 지적과(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 별관2동 4층) 담당 최영창

문서번호 지적 13531 - 1689
 시행일자 1997. 12. . (년)
 (경유)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년			
부시장	전 결			
국장	<i>[Handwritten Signature]</i>	법무담당관 <i>[Handwritten Signature]</i> 지정계장 <i>[Handwritten Signature]</i> 지적정보계장 <i>[Handwritten Signature]</i>		
과장	<i>[Handwritten Signature]</i>			
계장	<i>[Handwritten Signature]</i>			
기안	최영창	협조		

제목 서울특별시지적삼각점영구측표설치및관리규정 폐지

1. '79. 1. 8 지적측량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지적삼각점영구측표설치및관리규정"을 예규로 지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2. 훈령·예규등 행정규칙의 자치법규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동 관리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규정을 폐지 지적측량기준점관리를 단일화 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폐지규정 : 서울특별시지적삼각점영구측표설치및관리규정(훈령 제497호, 1979. 1. 8 제정)

나. 폐지이유 : 서울특별시지적삼각점영구측표설치및관리규정은 지적측량 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지적측량기준점의 측량방법이 점차 GPS(위성측량)측량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설치의 실익이 상실 되었으며, 영구측표의 재질이 철재로되어 GPS측량시 전파방해 등을 야기하여 정확한 관측 및 수신을 저해하고 있어 국립지리원에서 우리시 지적삼각점 영구측표를 철거하도록 하는 협조요청이 있었던바, 동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따로붙임 : 1. 폐지안 1부.

2. 서울특별시지적삼각점영구측표설치및관리규정 검토의견 1부.

3. 국가기준점관리에 관한 협조공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지적삼각점영구측표설치및관리규정(훈령 제497호) 검토

서울특별시지적삼각점영구측표설치및관리규정	검 토 의 건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내 지적삼각점의 영구측표(이하 "측표"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지적삼각점영구측표 설치 및 관리규정은 지적측량 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지적삼각점 영구측표는 1979년 부터 주요 삼각점표석 위에 철재로된 영구측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영구측표가 설치된 지적삼각점 주위에 수목이 우거지고 고층건물이 신축되어 지적삼각점 상호간에 시뮴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적측량기준점의 측량방법이 점차 GPS(위성측량) 측량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설치의 실익이 상실 되었으며, 영구측표의 재질이 철재로 되어 GPS 측량시 전파방해 등을 야기하여 정확한 관측 및 수신율 저해하고 있어 국립지리원에서 우리시 지적삼각점 영구측표를 철거하도록 하는 협조요청이 있었던바, 동 규정의 존치 이유가 없음.</p>
<p>제2조(설치기준) 측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주는 정사 60도 이상을 유지하고 3~4개를 설치하되 지하로 70센티미터 이상 콘크리트를 매설하여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2. 기초 콘크리트는 매 사주당 전체 하중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상으로 20센티미터 이상 노출하게 하여야 한다. 3. 삼각점과 사주와의 거리는 15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하여 기계조작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심주는 삼각점의 중심에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측표는 삼각점 상호간에 시뮴되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p>제3조(재료) 측표에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주는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철재 "ㄱ"자 형강으로 한다. 2. 심주의 굵기는 7.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3. 측표의 재료는 모두 아연 도금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1997. 12. 16

부시장

서울특별시지적삼각점영구측표설치및관리규정(훈령 제497호) 검토

서울특별시지적삼각점영구측표설치및관리규정	검 토 의 견
<p>제4조(유지관리)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측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측표에 별표2의 경고판을 부착하여 관계인 이외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p> <p>③구청장은 측표의 도난, 파손의 경우와 자연적인 멸실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할 책임을 진다.</p>	
<p>제5조(보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측표가 기울어져 그 효용상실의 우려가 있을 때 2. 낙뢰등 자연적인 측표의 파손 3. 도난등 인위적인 측표의 파손, 멸실등 	
<p>제6조(기타사항) 기초점 관리이 규정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요령에 의한다.</p>	
<p align="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측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p>	
<p align="center">부 칙</p> <p>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p>	

부시장

A X	1565
	1103

110-760 / 종로구 세종로77 종합청사 130X / 전화731-2540(행)2540 / 전송731 2515

문서번호 지적13531 - 294

발행일자 1995. 06. 12. ()

신 수신처참조

지적과장

선			지	
점	일자 시각	1995. 6. 12	시	
수	번호	3583	권	2001245 70
처	리	과	재	공
담	당	지	합	

국가기준점관리에 관한 협조

국립지리원장으로 부터 (국가기준점관리에 관하여 불임과 같이 임
있어 이참하니 이후 업무처리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국립지리원 협조공문 사본 1부. 끝.

지적과장 전령



수신처 : 110-760, 10-18, 대한지리학회

국립지리원

우 442-388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111 / 전화·전송 (0331) 211-1767(교306) 담당 정택영

문서번호 육지58250-614
일일지 1995. 5. 26

신청	과장	양	지	
접	일자	1995. 5. 30	시	
수	번호	1264	결	
처	의과	1493	재	
달	당자		공	
			람	

내무부장관
지적과장

국가기준점관리에 관한 협조요청

국리원에서는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점
은 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측량법 제18조(측량표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본삼각점을 이전 또는 손괴
하거나, 기타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는 할수 없으나.

3.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적측량을 위하여 기본삼각점에 영구측표(항말)를 설치하여
신계불량, 전파장애, 자기영향, 장비설치장애 등으로 국리원에서 실시하는 기본측량, 국토
인공위성(GPS), 지지기준량과 GPS에 의한 공공측량이 불가능한 실정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 연구용표를 개조 또는 원거함부를 조치하여 주시고, 기본삼각점반성위나 기 설치
되었던 위치에 지적삼각점을 설치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립지리원

